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피스텔) 분양광고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www.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com)로 대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모델하우스 운영지침이 바뀔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모델하우스 문의 바랍니다.
- 단, 당첨자 발표 후 계약기간 내 당첨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홈페이지(http://www.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com)를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공급계약 일정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이며,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홈페이지(http://www.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으로 인한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은 당첨자 본인 및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당첨자분들의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나는 유증상자는 견본주택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피스텔 분양 상담 전화(032-517-8005) 등을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거주자 우선분양 기준일은 분양신고일(2021.06.02, 광고일과 다름) 기준입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만 나이”요건 기준일은 분양광고일(2021.06.09)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에 가입 및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6.02,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인천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1.06.02, 광고일과 다름)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각 타입에 관계없이 1인당 1실 청약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되며,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5항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일시	2021.06.14.(월요일)	2021.06.17.(목요일), 16시 이후	2021.06.18.(금요일)~2021.06.19.(토요일)
방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홈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10:00 ~ 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22)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분양금액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 0001호(2021.06.02)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의 3,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부평구청 도시개발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건축허가번호 : 2010-부평구-재개발시행인가-1]
■ 2021.1.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등에 해당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66,786.2000㎡ (오피스텔 지분 12,026.8018㎡, 공동주택(아파트) 지분 53,291.0175㎡, 근린생활시설 지분 1,468.3807㎡)
- 건축물 연면적 : 325,461.2960㎡ (오피스텔: 58,608.7920㎡, 공동주택(아파트) 259,696.8180㎡, 근린생활시설: 7,155.6860㎡)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주차장(지하 3층 ~ 지하 1층), 공동주택(지상 1층 ~ 지상 45층, 1,909세대), 오피스텔(A동, B동, 지상 1층 ~ 지상 33층, 504실),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 ~ 지상 1층, 91호)
- 공급규모 : 지하 3층 ~ 지상 45층 15개동 중 오피스텔 공급대상 지하 3층 ~ 지상 33층,2개동(A동, B동) 총 504실
- 주차대수 : 총 2,874대(오피스텔 531대, 공동주택(아파트) 2,295대, 근린생활시설 48대)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 제5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은 다음과 같음

지역계수(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176	Sc	1.2	C	I	4.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정 메르칼리 진도(MMI) 등급 Ⅶ이며, 최대유효지반가속도는 0.169(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음.

■ 입주예정일 : 2024년 1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사업주체(사업시행자 겸 위탁자) :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 : 한국자산신탁(주) ■ 시공사 : 진흥기업(주)/효성중공업(주) ■ 분양대행사 : ㈜디앤플래닝에셋

■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 : 한국자산신탁(주)

■ 분양대금의 관리

•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간의 사업약정 및 [사업대행자방식 정비사업 차입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주)에서 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공급계약상 사업대행자로서 제반 의무를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매도자의 하자책임 등)는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합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실]

타입	호실수	타입별 계약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기타공용	주차장	소계		
42	189	42.9450	26.0005	68.9455	2.2680	29.2580	31.5260	100.4715	20.6285
44	122	44.2260	26.7472	70.9732	2.3360	30.1310	32.4670	103.4402	21.2352
59	193	59.9400	35.9518	95.8918	3.1660	40.8370	44.0030	139.8948	28.6908

※ 2014.12.0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의 내부선(안목치수선)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분양 면적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전용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 3.3058)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표의 공급대상의 주택형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인천광역시 부평구)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6.02.로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합니다.

• 우선분양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공개 추첨하며 우선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 우선 공급(인천광역시 부평구) 호실

타입	호실수	신청유형 호실 (수)		비고
		거주자 우선공급 (20%)	일반공급 호실	
42	189	38	151	※ 주민등록등본 상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분양신고일 2021.06.02.기준) ※ 한국부동산원 전산추첨을 통해 각 타입별, 층, 호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배정
44	122	24	98	
59	193	39	154	

■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실, 원]

타입	층별	호실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50%)					잔금(40%)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입주 지정일
							계약시	2021.12.08	2022.07.06	2023.02.08	2023.09.06	2024.04.11	
42	1층	6	109,825,000	138,870,000	13,887,000	262,582,000	26,258,200	26,258,200	26,258,200	26,258,200	26,258,200	26,258,200	105,032,800
	2층	6	110,865,000	140,190,000	14,019,000	265,074,000	26,507,400	26,507,400	26,507,400	26,507,400	26,507,400	26,507,400	106,029,600
	3~5층	18	113,042,000	142,940,000	14,294,000	270,276,000	27,027,600	27,027,600	27,027,600	27,027,600	27,027,600	27,027,600	108,110,400
	6~10층	30	115,176,000	145,630,000	14,563,000	275,369,000	27,536,900	27,536,900	27,536,900	27,536,900	27,536,900	27,536,900	110,147,600
	11~15층	30	116,216,000	146,950,000	14,695,000	277,861,000	27,786,100	27,786,100	27,786,100	27,786,100	27,786,100	27,786,100	111,144,400
	16~20층	30	117,299,000	148,330,000	14,833,000	280,462,000	28,046,200	28,046,200	28,046,200	28,046,200	28,046,200	28,046,200	112,184,800
	21~25층	24	118,891,000	150,330,000	15,033,000	284,254,000	28,425,400	28,425,400	28,425,400	28,425,400	28,425,400	28,425,400	113,701,600
	26~30층	30	121,068,000	153,080,000	15,308,000	289,456,000	28,945,600	28,945,600	28,945,600	28,945,600	28,945,600	28,945,600	115,782,400
	31층 이상	15	123,191,000	155,780,000	15,578,000	294,549,000	29,454,900	29,454,900	29,454,900	29,454,900	29,454,900	29,454,900	117,819,600
44	1층	4	111,003,000	140,360,000	14,036,000	265,399,000	26,539,900	26,539,900	26,539,900	26,539,900	26,539,900	26,539,900	106,159,600
	2층	4	112,086,000	141,740,000	14,174,000	268,0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26,800,000	107,200,000
	3~5층	12	114,220,000	144,430,000	14,443,000	273,093,000	27,309,300	27,309,300	27,309,300	27,309,300	27,309,300	27,309,300	109,237,200
	6~10층	20	116,396,000	147,180,000	14,718,000	278,294,000	27,829,400	27,829,400	27,829,400	27,829,400	27,829,400	27,829,400	111,317,600
	11~15층	20	117,479,000	148,560,000	14,856,000	280,895,000	28,089,500	28,089,500	28,089,500	28,089,500	28,089,500	28,089,500	112,358,000
	16~20층	20	118,573,000	149,930,000	14,993,000	283,496,000	28,349,600	28,349,600	28,349,600	28,349,600	28,349,600	28,349,600	113,398,400
	21~25층	20	120,198,000	152,000,000	15,200,000	287,398,000	28,739,800	28,739,800	28,739,800	28,739,800	28,739,800	28,739,800	114,959,200
	26~30층	20	122,373,000	154,750,000	15,475,000	292,598,000	29,259,800	29,259,800	29,259,800	29,259,800	29,259,800	29,259,800	117,039,200
	31층 이상	2	124,507,000	157,440,000	15,744,000	297,691,000	29,769,100	29,769,100	29,769,100	29,769,100	29,769,100	29,769,100	119,076,400
59	1층	4	147,353,000	186,320,000	18,632,000	352,305,000	35,230,500	35,230,500	35,230,500	35,230,500	35,230,500	35,230,500	140,922,000
	2층	6	148,849,000	188,210,000	18,821,000	355,880,000	35,588,000	35,588,000	35,588,000	35,588,000	35,588,000	35,588,000	142,352,000
	3~5층	18	151,749,000	191,880,000	19,188,000	362,817,000	36,281,700	36,281,700	36,281,700	36,281,700	36,281,700	36,281,700	145,126,800
	6~10층	30	154,742,000	195,660,000	19,566,000	369,968,000	36,996,800	36,996,800	36,996,800	36,996,800	36,996,800	36,996,800	147,987,200
	11~15층	30	156,186,000	197,500,000	19,750,000	373,436,000	37,343,600	37,343,600	37,343,600	37,343,600	37,343,600	37,343,600	149,374,400

	16~20층	30	157,683,000	199,390,000	19,939,000	377,012,000	37,701,200	37,701,200	37,701,200	37,701,200	37,701,200	37,701,200	150,804,800
	21~25층	30	159,859,000	202,140,000	20,214,000	382,213,000	38,221,300	38,221,300	38,221,300	38,221,300	38,221,300	38,221,300	152,885,200
	26~30층	30	162,800,000	205,870,000	20,587,000	389,257,000	38,925,700	38,925,700	38,925,700	38,925,700	38,925,700	38,925,700	155,702,800
	31층 이상	15	165,794,000	209,650,000	20,965,000	396,409,000	39,640,900	39,640,900	39,640,900	39,640,900	39,640,900	39,640,900	158,563,600

• 오피스텔 동별, 타입별, 층, 향, 구조, 면적 등에 따라 분양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실별 정확한 분양 대금(공급금액)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총 분양대금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분양대금은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른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은 전체 공용으로 하며, 각 호별로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는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시설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분할하되 소수점 네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오피스텔 각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네째자리로 정리하였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등 기부채납, 확정측량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하여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등 제외)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 각 세대별, 오피스텔 각 실별,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은 504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함.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가 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및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6.02, 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등)검토 후 분양신고일 기준 인천시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신청결과 경쟁 발생 시 사업주체는 기준에 따라 당첨자 및 호실을 전산 추첨하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일반 청약자에 포함합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

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되며,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II 청약신청자격, 장소 및 신청방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분양광고일(2021.06.09)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2, 동법 시행령 제9조2에 따라 분양 호실의 20%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1.06.02, 광고일과 다름)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자에 한해 우선 공급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자는 청약 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역을 잘못 입력하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는 관련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검토 후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도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은 타입으로 접수하며, 층/호는 신청 타입 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되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시	2021.06.14.(월요일)	2021.06.17.(목요일), 16시 이후	2021.06.18.(금요일)~2021.06.19.(토요일)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
방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홈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계약 (10:00 ~ 16:00)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22)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전에 사용할 네이버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네이버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 대행은행인 KB국민은행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안내

구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거주자 우선분양 선택(선택사항), 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전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청약전 반드시 인터넷뱅킹 가입 및 인증서 발급을 받으시고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KB국민은행 전지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4">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KB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 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 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KB국민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으로 진행하며 견본주택 방문 청약을 활용한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와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6.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1.06.09)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층·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1년 06월 17일(목)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호실을 추첨으로 선정 후, 우선분양 당첨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와 일반 신청자를 모두 포함하여 남은 주택의 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
동·호수 결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 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 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 완료 및 계약 구비서류를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 제한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 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기타사항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및 시기

구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2021.06.18.)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2021.06.18.)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1.06.18.(금요일)~2021.06.19.(토요일)	10:00~16:00	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22)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오피스텔)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KB국민은행	482601-01-158985	한국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A동 801호” 당첨자 홍길동“ → A8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급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익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통지 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며 납부기일에 맞추어 고지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무통장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어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당첨취소 및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 : A동 801호 홍길동의 경우 “A801홍길동”이라고 기재]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하며,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어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1. 계약금 입금영수증(반드시 무통장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 지참) 2. 청약신청 접수증(영수증) 3. 인감도장 4.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용) 5. 주민등록등본 1통,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6.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7. 주민등록 초본 1통(거주자 우선 분양 당첨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분양신고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법인 계약 시	1.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부) 5.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오피스텔 계약용)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 7. 법인대표이사 본인 계약시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외국법인일 경우: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3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포함) 추가 제출 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당사 견본주택 비치) -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대리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1부 - 대리인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1.06.09.)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이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에 의한 당첨 건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수탁자로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계약자가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됨에 따라 반환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내 계약금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부지 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장 내 견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을 준수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청약 당첨자의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며,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 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중도금 대출기관은 시행위탁사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금리 및 금융기관 선정 등 대출기관 선정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금액 : 대출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계약금을 완납한 계약자에 한하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경우 총 분양가격의 50%범위 내 무이자대출을 알선 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의 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시행위탁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알선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정책(DTI, LTV, DSR, RTI 등의 적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에 따라 중도금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기 바람)
- 중도금 대출신청은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가 통보하는 일자에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무이자대출로써 전체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중도금대출기관 알선 및 중도금대출금 조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중도금대출에 대한 일체 책임과 의무는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모든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가격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 및 원금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중도금 대출 : 1, 2, 3, 4, 5회차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로써 50% 범위내에서 알선하나, 계약금 10% 및 잔금은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 및 시공사가 별도로 알선하지 않음으로 지정된 계좌로 수분양자가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계약금 및 중도금 연체가 있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연체 시 연체료 발생함)
-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전에 대출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중도금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외국인 또는 법인인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와 대출가능 금융기관간 대출업무협약이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대출제한 및 금리상승 등)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대출한도초과, 중복초과 등) 등으로 대출조건 및 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며,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와 위탁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조건(금융기관, 금리 등)에 이의가 있는 계약자는 분양가격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자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Ⅳ 기타 계약자 안내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본 오피스텔은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 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공동명의,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 개정 등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 및 양수인이 책임을 집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4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별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의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본 건축물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 제10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 특정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업대행자방식 정비사업 차입형토지신탁 특약사항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사업대행자방식 정비사업 차입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진행되며 차입형토지신탁계약과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함을 공급계약자는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본 계약상 공급재산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사업대행자방식 정비사업 차입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은 사업주체는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차입형토지신탁사업의 수탁자로서 공급계약상 사업대행자로서 제반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시공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대표) 및 효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대행이 완료된 경우, 2)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3)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가장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사업대행자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급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중도금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위탁자인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V 기타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

• 본 오피스텔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형별면적(㎡)X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해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당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일부 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후 샘플하우스(마감선행호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 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메일 주소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 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 수인하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모형 및 분양 홍보물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의 명칭 및 호실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관련 행정기관의 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유시설물 대지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이용 계획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승강기 홀과 복도는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조건 변경, 각종 인증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인증을 위한 변경사항 등에 동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는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및 CG 조감도, 투시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특기시방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임한 감리가 인정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 자재 제조사 시공 기준에 따릅니다.
•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입면디자인(도장디자인 포함), 주출입구, 조경, 색채, 몰딩, 창호,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옥탑장식물, 각종 시설물의 디자인 및 마감 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의 품귀, 품절,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 동질, 동가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 지연 보상금액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착공 후 현장에서의 여건이나 지반현황 등의 상황에 따라 구조, 성능, 상품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물(이동식 가구) 등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권은 층별, 실별로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실은 경관 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사업시행사 겸 위탁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사업시행사 겸 위탁자) 변경 시 입주자(당첨자 등 포함)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측면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채 등), 오피스텔 단지명 사인물, 공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DA 등 외부시설물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주변여건에 따라 항공기 및 도로, 교통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사생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배치 특성 상 시각적 간섭, 소음, 바람, 일조권 간섭 등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차장 이외의 주민공동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용으로 계획되어 있음.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또는 이전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세금(취득세 등)이 중과 또는 가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창호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 시험, 추후 본 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 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색상, 두께, 사이즈, 프레임 위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승강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 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선임한 감리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 말발굽 등)의 임의설치, 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시 견본주택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 관련
•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단지모형, 각 타입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건축허가도서 및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선택옵션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 (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VR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텐,블라인드,침구류,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TV,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승인도면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등 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은 침실 내부에 설치되며, 일부 공간을 차지할 수 있으며, 위치는 견본주택 내 표시 위치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동 제연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용 DA, 공개공지,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생활폐기물보관소, 실외기실, 자전거보관대, 포장패턴 및 재료, 주변현황

(단지내외 옹벽 및 조경석, 조경시설, 단지주변 레벨현황, 실외기실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호실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홈통,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위한 냉방전용 제품이며, 본공사시 거실 1개소만 설치되며, 침실 1개소에 냉매배관만 설치 됩니다.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 시스템 에어컨이 제공됩니다.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 · 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평면도 및 카탈로그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건물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안내
- 사업주체 또는 시행위탁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해 건물관리를 위한 총액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물관리용역업체는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 한도 내에서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 건물관리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관리수수료는 월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 단지 여건
- 당 사업지에는 공공 보행통로 및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외부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입주자가 공동으로 하여야함.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 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 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대지경계 밖의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 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와 접한 단지 내 보도는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 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 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용 지하주차장은 A동 쪽에 진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관계 법령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동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용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붕옥상, 옥탑층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TV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 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인허가 관련 기준에 따라 아파트에 해당하며,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들 시공부위에 마이너찬넬 보강은 제외합니다.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표현된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용으로 계획된 시설로, 오피스텔에는 별도의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경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준주거지역내 건축되는 오피스텔로으로, 법적 채광부 이격거리 및 인동거리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인접 건물에 의한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아파트용 주차장과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거시설(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며, 주차장 진출입 및 이용 동선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남측 도로변에 주거주차장(아파트) 출입구가 계획되어져 있으며,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됨.
• 단지 북측 출입구는 상가용 지상주차장과 아파트용 주차장 출입구로 진입이 가능함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음.
• 비주거주차장 및 주거주차장 출입구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진출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도시철도와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차후에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지하에는 비주거용 전기실, 발전기실 및 기계실 등이 배치되며 인근에 DA가 설치될 예정으로 소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아파트동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공용으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주민공공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의 동 인근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전주 또는 맨홀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 인입 정책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학차량 및 쓰레기 수거차량, 택배차량, 비상차량 등은 단지 내 구성된 비상차량 동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진출,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동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생활시설,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호별 계단 및 E/V실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 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고층 오피스텔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진입층 및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에어매트 구간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지는 에어매트 설치구간이 적용된 현장으로 에어매트 설치 예정구간에는 교목이 식재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경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오피스텔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코아는 피난용 승강기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각 동 120m/min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오피스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오피스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옥외조경 공간은 개인이 점유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저수조 등은 각 시설별(주거(아파트)/비주거(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전용면적비율대로 면적 분배되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기계. 소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공용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복도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 돌출물이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식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점 시 일부 화장실에 인접한 실의 경우 소음 및 악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및 펌프실, 제연휀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시 인접한 호실은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관련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각 동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 됨에 따라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1층 D.A(Dry Area_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 시설, 맨홀, 실외기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Dry Area_급배기타워)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입을 수 있으며, 보행 및 진 출입시 바람, 소음, 매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A(Dry Area_급배기타워) 공간은 구역별 급배기를 위한 설비 통로공간으로 입주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하수/오수/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오피스텔용 주민공동시설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아파트용으로 계획된 시설임
• 오피스텔에는 아파트와는 달리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아 서비스 면적이 없음
• 오피스텔 코아에는 층별 통신실이 계획되어 있음
•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 동 사이에 운동시설,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설비 등 시설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참조)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부계단 및 외부엘리베이터, 상가, 관리동, 비상차량램프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 단지로 인해 일부세대는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A, B동 남측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 호실은 소음,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및 시각적 간섭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 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디딤판의 천연가공석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인조석재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옵션 평면 선택 등의 사유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제품은 각 타입별 평면 형태에 따라 크기 및 개폐방식이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 동가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 (부부/공용)은 본 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카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분합문 하부 마감을 고려하여 바닥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마루 자재 및 인조석재는 자재의 특성 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및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젠다이,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석재는 자재의 특성 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 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의 품질 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공사 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니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천연가공석,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튼박스의 깊이는 배관 설치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피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 분전반이 신발장 내에 설치되는 경우 선반(신발장 가구)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전반 개폐를 위해 추가적인 선반배치는 지양해야 합니다.
• 세대 내 침실 내 분전반과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견본주택 내 사전 표시한 사항으로 민원 또는 이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주방TV,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건립 타입 또한 건립 타입과 각 기구의 설치 수량 및 위치 등은 평형에 고려하여 변경됩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스마트 원패스 키는 세대 당 1개,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
• 스마트폰 키 시스템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해당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건축물 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공급신청 후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에 포함된 가구는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입니다.

• 분양가에 포함된 가전제품은 전기쿡탑 2구 , 세탁기(9KG), 빌트인 콤비냉장고 입니다.
• 각 실별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은 천정형, 침실1은 벽걸이 기준으로 총 2개소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침실2,3은 냉매배관 및 콘센트 미제공)
• 시스템 에어컨의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각 실별 냉난방 사용요금은 각 실별 개별 계량기(냉난방용)에 의하여 부과되며, 공용부분은 별도 계량 후 전체 호실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지역난방이 시공됩니다.
•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은 실외기실에 시공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미터기의 위치(복도 또는 실외기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설비는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별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환기 디퓨져 사양,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천정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환기설비의 환기캡이 외부설치에 따른 외부 입면 일부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별 환기설비의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실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 점검구 및 배관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 화장실 천장내부에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에 면해 있는 인접실의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장실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실의 상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점검구 개폐를 위해 화물적재 및 가구설치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세탁실은 비난방구역으로 세탁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 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다용도실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다용도실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별 급수요금은 개별 계량기에 의해 부과됩니다.
• 일부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10층 일부 세대에는 관련 법령 및 관리 관청 요청사항으로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협의과정 중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붕층에는 인명구조공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헬리포트와는 다른 시설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기타
• 모든 부동산 계약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분양받는 자를 위한 공사 진척 사항을 홈페이지(www.harrington.co.kr)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한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진일기술단	유원이앤에프㈜
감리금액	5,582,242,600	1,015,382,000	1,756,7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 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사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사업시행사 겸 위탁자)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59, 2층	124271-0004670
사업대행자 겸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110111-2196304
시공사	진흥기업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송도동, 송도밀레니엄 807호)	110111-0006349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110111-6770154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디앤플래닝에셋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25, 502호(서울숲한라에코밸리)	110111-708194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카이트타워)
- 사업방식 : 사업대행자방식 정비사업 차입형토지신탁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 070012

견본주택 안내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안내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8-4(도로명주소: 동수로 22) / 연락처 : 032)517-8005 / 홈페이지 : www.부평역해링턴플레이스.com/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

부평역 해링턴 플레이스

2,400여 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라이프
GTX-B노선(2027년 개통 예정)
쾌 속 교 통 망
청약통장 필요 없는
현 명 한 선 택

문의 **032) 517-8005**

2,413세대 중 (오피스텔) 42 / 44 / 59㎡ 총 504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